



건강특별시, 서울시한의사회가 함께 합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Seoul Korean Medicine Association

수 신 분회장
(경유) 사무국장
제 목 '자보심사지침'신설 관련 회원 안내 요청

1. 한의약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 관련근거 : 대한의-2020-09-0152 (2020.9.18.)
3. 상기근거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설한 '자보심사지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분회 소속회원님들께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보심사지침' : 기존 고시에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세부사항없이 자보진료수가만 존재하는 항목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시행시기, 적응증 등)을 명시한 것으로, 자보진료수가 심사에 적용

< 다 음 >

○ 자보심사지침(한의 관련) / 시행일 : 2020.12.1.진료분부터

- 교통사고환자에 소애주구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시행시 적용 기준
: (현행) 불인정 / (변경) 기준(심사지침)에 준하여 인정

교통사고 환자(15세이상)에게 소애주(길이 10mm, 두께 1~2mm)를 이용하여 시행한 직접애주구는 유효한 온열자극을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1. 요배부, 둔부, 견·고·슬관절의 해당 부위의 혈위에 소애주를 5장 이상 시행한 경우 인정함
2. 상기 1.을 제외한 부위의 혈위에 소애주를 3장 이상 시행한 경우 인정함
3. 소애주(길이 10mm, 두께 1~2mm)를 이용하여 직접애주구 시행 시 혈자리, 장수, 환자상태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 교통사고환자에 첩약과 건강보험 등제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 병용 투여 적용기준

: (현행) 사례별인정 또는 불인정 / (변경) 첩약과 건강보험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 병용 투여 불인정 (다만, 입원 중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1회 복용량에 한해 사례별 인정)

1. 각 약제의 적응증 및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인정하며 첩약과 건강보험 등제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2. 다만, 입원기간 중에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1회 복용량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함

-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체온열검사 적용기준

: (현행) 사례별 인정 또는 불인정 / (변경) 기준(심사지침)에 준하여 인정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한 체온열 검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다 음 -

가. 적응증 및 시행횟수

- 1) 적응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혈관질환(레이노증후군포함)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
- 2) 시행횟수: 최초 수상일(사고발생일)로부터 2 ~ 3주 경과 후 상기 적응증 의심시 1회,
확진시 환자 증상변화 확인위해 추가 1회 인정

나. 검사시설

- 1) 공기흐름이 일정한 공간, 태양광 등 차단
- 2) 실내 온도 25도 전후(23~27도), 습도 30~75%를 유지

다. 검사방법

- 1) 검사 전 검사실에서 촬영부위를 가벼운 가운착용 후 체표온도를 실내환경 온도에
적응 시켜야 함(단, 겨울에는 20분간 실내온도에 적응)
- 2) 검사 시 촬영부위를 완전 탈의한 상태로 실시하여야 함

라. 체온열 검사 시행시 검사시간, 실내온도, 습도, 검사부위, 검사결과, 환자평가 등
관련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 첨부 : 관련 안내문 1부. 끝.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부장 윤상환 국장 김태준 처장 김석모 협조

서한의 - 제 152 호 (2020.09.21.)

우)0256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420 (421호) / 홈페이지 : <http://www.skma.or.kr>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전화 : (대)02-960-0811 / 팩스 02-6944-8075 / E-mail : skma@skma.or.kr

자보심사지침 신설 안내

*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42호(2020. 9. 16.)

* 2020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

- 아 래 -

■ 자보심사지침이란?

- 기존 고시에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세부사항없이 자보진료수가만 존재하는 항목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시행시기, 적응증 등)을 명시한 것으로, 자보진료수가 심사에 적용.

■ 자보심사지침(한의 관련)

□ 교통사고환자에게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시행시 적용기준

- 현행 : 불인정

실뿔을 이용한 구술은 시술부위(경혈)에 온열자극을 주기 어려워 치료 유효성의 실효를 얻기 어려우므로 적정진료로 볼 수 없어 동 기관에서 청구한 직접애주구는 인정하지 아니함.
(2016년 제8차 자동차보험 심사분과위원회 한의과 분야)

- 자보심사지침(20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I. 행위 건강보험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비고 (관련 고사)
항 목	제 목	내 용	
하-30가(1) 직접애주구	교통사고 환자에게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시행시 적용 기준	교통사고 환자(15세이상)에게 소애주(길이 10mm, 두께 1~2mm)를 이용하여 시행한 직접애주구는 유효한 온열자극을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1. 요배부, 둔부, 견·고·술관절의 해당 부위의 혈위에 소애주를 5장 이상 시행한 경우 인정함 2. 상기 1.을 제외한 부위의 혈위에 소애주를 3장 이상 시행한 경우 인정함 3. 소애주(길이 10mm, 두께 1~2mm)를 이용하여 직접애주구 시행 시 혈자리, 장수, 환자상태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하-30 가(1)

□ 교통사고환자에게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 병용투여시 적용기준

○ 현행 : 사례별 인정/불인정

응급증상 등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첩약 병용을 사례별 인정가능하나, 병용투여에 대한 객관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주된 처방 1종만 인정함
환자상태에 따라 첩약 처방시 추가 증상에 대한 가미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병용투여된 청상견통탕은 불인정하나, 설사증상으로 투약한 보중익기탕은 설사가 호전된 4일분(3/27~)만 인정
(2016년 제5차 자동차보험심사자문위원회 한의과 분야)

당귀수산과 건각 병용투여는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중복투여로 주된 처방 1종만 인정하며, 입원당일 두근거림과 수면장애 증상에 투여된 시용탕은 타당하나 첩약 처방시 추가 증상에 대한 가미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 2일째부터 병용투여된 시용탕은 불인정함
(2017년 제2차 자동차보험심사자문위원회 한의과 분야)

○ 자보심사지침(20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I.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건강보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비고 (관련 고시)
항 목	제 목	내 용	
바-1 한방첩약, 카-100(가)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 는 복합엑스제) 병용투여시 적용기준	1. 각 약제의 적응증 및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인정하며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2. 다만, 입원기간 중에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1회 복용량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 바1, 카-100(가)

□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체온열검사 적용기준

○ 현행 : 사례별 인정/불인정

체온열검사는 검사소견(방사선촬영등)과 환자의 증상이 일치하지 않아 통증의 진위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한방진료를 최초로 시작한 지 3주 이후에 1회 정도 선택적으로 실시함이 타당함. 따라서, 진료내역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상병을 진단할 만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수상일 등을 고려하여 등 건에 실시한 체온열검사는 조정함.
(2016년 제5차 자동차보험심사자문위원회 한의과 분야)

○ 자보심사지침(20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Ⅱ. 검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건강보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비고 (관련 고시)
항 목	제 목	내 용	
노-776 체온열 검사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체온열 검사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한 체온열 검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다 음 - 가. 적응증 및 시행횟수 1) 적응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혈관질환(레이노증후군포함)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 2) 시행횟수: 최초 수상일(사고발생일)로부터 2 ~ 3주 경과 후 상기 적응증 의심시 1회, 확진시 환자 증상변화 확인위해 추가 1회 인정 나. 검사시설 1) 공기흐름이 일정한 공간, 태양광 등 차단 2) 실내 온도 25도 전후(23~27도), 습도 30~75%를 유지 다. 검사방법 1) 검사 전 검사실에서 촬영부위를 가벼운 가운착용 후 체표온도를 실내환경 온도에 적응 시켜야 함(단, 겨울에는 20분간 실내온도에 적응) 2) 검사 시 촬영부위를 완전 탈의한 상태로 실시하여야 함 라. 체온열 검사 시행시 검사시간, 실내온도, 습도, 검사부위, 검사결과, 환자평가 등 관련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 노-776

- 별첨 : 1.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심평원)
2. 자보심사지침 관련 질의·응답(심평원)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

1. 개요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7호('20.5.7.)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자보심사지침 공지사항 안내 사이트
 - 대국민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알림→공지사항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자동차보험→알림방→자동차보험 알림방
- 자보심사지침 공고 사항을 귀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길 바라며, 임상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자보심사지침은 2020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합니다.

2. 주요내용

- 자보심사지침 신설
 - 총 5항목

연번	분류	분류번호	제목
1	[별표]산재보험 제15절 재활치료료	어-4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
2	건강보험 제7장 이학요법료	서-121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이온삼투요법 적용기준
3	건강보험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하-30	교통사고 환자에게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해주구 적용기준
4	자보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2]	버-1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 (또는 복합엑스제) 병용투여시 적용기준
5	자보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2]	노-776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체온열 검사 적용기준

3. 시행일 : 2020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242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7호, 2020.5.7.시행)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보심사지침」 개정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자보심사지침은 2020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I.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			I.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비고 (관련 고시)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어-4 도수치료	<신설>	<신설>	어-4 도수치료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 제15절 재활치료료 산정기준을 동일 적용하되, 시행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 다 음 -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 요법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함	자보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5절 재활치료료 어-4 ※해당고시 내용은 '별첨'첨부

현 행			개 정			
					<u>나. 골절부위에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도수치료를 시행해야 할 만한 의사의 소견 및 환자의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u> <u>다. 도수치료 시행시 시행기법 및 시행자, 시행부위,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u> <u>※ 환자 상태에 대한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관절가동범위(ROM), 통증 평가척도(VAS 등), 자세평가 및 근력 검사 포함한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체질가능부전(Somatic dysfunction)을 평가한 결과로 판단함</u>	
I. 행위 건강보험 제7장 이학요법료			I. 행위 건강보험 제7장 이학요법료			비고 (관련 고시)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서-121 이온삼투 요법	<신설>	<신설>	서-121 이온삼투 요법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이온삼투	<u>1.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이온삼투 요법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응증(상완골의 내·외측 상과염, 족저</u>	서-121 이온삼투요 법의 인정기준(보건 복지부 고시

현 행			개 정		
			요법 적용기준	근막염) 및 실시기간은 동일 적용함. 2. 다만,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급성기 이후의 근골격계 질환에 사례별로 인정함 3. 이온삼투요법과 물리치료는 동시 시행할 수 있음	제2011-37호, 2011.4.1.시행) ※해당고시 내용은 '별첨'첨부
I. 행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I. 행위 건강보험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하-30가(1) 직접해주 구	<신설>	<신설>	하-30가(1) 직접해주 구	교통사고 환자에게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해주구 시행시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15세이상)에게 소애주(길이 10mm, 두께 1~2mm)를 이용하여 시행한 직접해주구는 유효한 온열자극을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1. 요배부, 둔부, 견·고·슬관절의 해당 부위의 혈위에 소애주를 5장 이상 시행한 경우 인정함 2. 상기 1.을 제외한 부위의 혈위에 소애주를 3장 이상 시행한 경우 인정함
					비고 (관련 고시)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하-30 가(1)

현 행			개 정			
					3. 소애주(길이 10mm, 두께 1~2mm)를 이용하여 직접애주구 시행 시 혈자리, 장수, 환자상태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I.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건강보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I.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건강보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비고 (관련 고시)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버-1 한방첩약	<신설>	<신설>	버-1 한방첩약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 제) 비용투여 시 적용기준	1. 각 약제의 적응증 및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인정하며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와의 병용 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2. 다만, 입원기간 중에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1회 복용량에 한해 사례 별로 인정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 버1, 카100(가)

현 행			개 정			
II. 검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건강보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II. 검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건강보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비고 (관련 고시)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노-776 체온열 검사	<신설>	<신설>	노-776 체온열 검사	<u>교통사고</u> <u>환자에게</u> <u>시행하는</u> <u>체온열</u> <u>검사</u> <u>적용기준</u>	<u>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한 체온열 검사는</u> <u>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u> <u>- 다 음 -</u> 가. 적응증 및 시행횟수 1) 적응증: <u>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u> <u>증성 통증, 말초혈관질환(레이노증후</u> <u>군포함)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u> 2) 시행횟수: <u>최초 수상일(사고발생일)로</u> <u>부터 2 ~ 3주 경과 후 상기 적응증</u> <u>의심시 1회, 확진시 환자 증상변화 확인</u> <u>위해 추가 1회 인정</u> 나. 검사시설 1) <u>공기흐름이 일정한 공간, 태양광 등</u> <u>차단</u> 2) <u>실내 온도 25도 전후(23~27도), 습도</u> <u>30~75%를 유지</u>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 노-776

현 행			개 정			
					<u>다. 검사방법</u> 1) <u>검사 전 검사실에서 촬영부위를 가벼운 가운착용 후 체표온도를 실내환경 온도에 적응 시켜야 함(단, 겨울에는 20분간 실내온도에 적응)</u> 2) <u>검사 시 촬영부위를 완전 탈의한 상태로 실시하여야 함</u> <u>라. 체온열 검사 시행시 검사시간, 실내 온도, 습도, 검사부위, 검사결과, 환자 평가 등 관련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u>	

[별첨]

☐ 도수치료 관련 산재고시

자보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제2항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제15절 재활치료료 1. 전문재활치료료 【어-4 도수치료】 1. 카이로프랙틱, 정골의학, 정형도수치료 등의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과목의 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도수치료는 주 3회 이내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만 산정 가.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골의학(Osteopathy), 정형도수치료(Orthopaedic manual therapy)는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2. 시술부위를 불문하고 소정금액을 산정 3.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마사지치료(사-105)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며, 운동치료(사-106, 사-116) 또는 재활기능치료(사-130)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

☐ 이온삼투요법 관련 건강보험 고시

건강보험 고시(현행)
○ 이온삼투요법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7호, '11.4.1.시행) 1. 서121 이온삼투요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액본인부담하도록 함 - 다 음 - 가. 적응증: 상완골의 내·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 나. 실시기간: 주 1~2회 간격으로 4주 실시 원칙, 필요시 소견서 첨부하여 최대 4주까지 추가실시 2. 위 1.에 해당하는 이온삼투요법을 다른 물리치료와 병행 실시하는 경우 : 외래 진료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 하도록 함.

자보심사지침 관련 질의 · 응답

※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20-242호(2020.9.16.)관련

▣ 자보심사지침 적용시기

연번	질의	답변
1	자보심사지침은 적용은 언제부터 인가요?	2020.12.1.일 진료분부터 적용합니다.
2	자보심사지침을 건강보험이나 산재, 실손보험에도 적용해도 되나요?	자보심사지침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위해 만든 지침으로 교통사고 환자에게만 적용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산재, 실손보험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교통사고환자에게 기존에 적용하던 건강보험 고시 및 지침은 이제 적용하지 않고 자보심사지침만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교통사고 환자에게 기존에 적용하던 건강보험 기준 및 자보진료수가기준(산재기준 일부 포함), 자보심사지침 모두 적용합니다. ※자보심사지침은 기존 고시에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세부사항 없이 자보 진료수가만 존재하는 항목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시행시기, 적응증 등)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 도수치료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도수치료 자보심사지침 '가'에서 '제7장 이학요법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우선 시행 치료의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질환의 정도 및 환자상태에 따라 호전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선 시행 치료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호전여부 및 제7장 이학요법료 치료기간은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도수치료 시행시 이학요법료 종류, 시행기간, 호전여부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도수치료 청구시 함께 제출(진료기록부 등)하여야 합니다.
2	환자 상태에 대한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어떻게 판단 하나요?	호전여부 판단은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등을 통해 평가합니다. ※ 도수치료 시행여부 판단을 위해 시행하는 ROM, VAS는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3	골절부위에 도수치료를 시행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골절 유합 후 도수치료는 가능한가요?	완전 골절 유합 후에는 도수치료 가능합니다.

■ 이온삼투요법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건강보험 고시에서 상완골의 내·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에만 급여하고 나머지 질환은 전액본인부담인데 자동차보험에서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상병에 대해서 자보진료수가로 인정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환자에게 이온삼투요법을 시행시 건강보험 고시의 적응증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전액본인부담 하는 질환(상완골의 내·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 이외 질환)은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급성기 이후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사례별로 인정합니다.
2	적응증의 경우 건강보험 고시에 명시된 사항을 동일 적용한다고 했는데 실시기간도 건강보험 고시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이온삼투요법은 건강보험 고시의 적응증 및 시행시기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적응증 이외 질환에 시행시 급성기 이후의 근골격계 질환에 필요하다는 의

	하나요?	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합니다.
--	------	--------------------------

■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교통사고환자 15세 미만은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15세 미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는 신체적 성숙도를 고려하여 15세 이상에만 적용합니다.
2	혈자리 및 장수 관련하여 진료 기록부에만 기록하면 되는 건가요?	소애주를 이용하여 직접애주구 시행 시 혈자리, 장수, 환자상태 등 관련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시고, 직접애주구 청구시 해당내용을 기록한 진료기록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체온열 검사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촬영부위는 반드시 완전 탈의해야 하는 건가요?	촬영부위가 전신일 경우 정확한 검사결과를 위해 완전 탈의(속옷 탈의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부분촬영일 경우 촬영부위만 노출하면 되나, 속옷이 촬영부위에 영향을 끼친다면 속옷 탈의가 필요합니다.
2	적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혈관질환(레이노증후군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체온열 검사를 할수 있는 건가요?	해당 적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혈관질환(레이노증후군 포함))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시행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진료기록부에 기록 후 청구시 해당 내용을 확인 할수 있도록 관련 자료(진료기록부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체온열 검사 자보심사지침에 검사실 환경(습도, 실내온도 태양광 차단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검사실 환경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나요?	자보심사지침에 나와 있는 검사실 환경기준 및 검사방법은 표준화 된 것으로 자보심사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검사환경(습도 30~75%, 실내온도 25도 전후, 밀폐된 공간, 태양광 차단 등)은 반드시 모두 지켜야 하며,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합니다.